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 (법률 제16908호, 2020. 2. 4.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한정하되 국가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의료리베이트 범죄 등을 규정

2) 경제범죄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관세,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산업기술유출, 마약수출입 범죄 등을 규정

3) 공직자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

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를 규정

4) 선거범죄로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를 규정

5) 방위사업범죄로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를 규정

6) 대형참사범죄로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참사 사건과 관련한 범죄, 국가 주요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범죄를 규정

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0. 8. 7. ~ 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 목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주요공직자”라 한다)가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대한 같은 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5조에 해당하는 죄 및 같은 법 제2조의 뇌물에 대한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다. 「변호사법」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및 제114조에 해당하는

죄

라. 「정치자금법」 제45조·제50조에 해당하는 죄

마. 「의료법」 제88조2호·제23조의5·제91조에 해당하는 죄 및

「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97조에 해당하는 죄

바. 「형법」 제357조·제359조(제357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에 해
당하는 죄

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7
조·제9조에 해당하는 죄

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6조에 해당
하는 죄

자. 「상법」 제630조에 해당하는 죄

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 제4조에 해당하는 죄

카. 가목부터 아목 및 차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제4조·제7조에 해당하는 죄

2.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
7조, 제347조의2, 제351조(제347조·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
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

당하는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 제448조에 해당하는 죄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에 해당하는 죄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제646조·제655조·제656조에 해당하는 죄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0조에 해당하는 죄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제31조에 해당하는 죄

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에 해당하는 죄

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 죄

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죄

하. 「대외무역법」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9조제1항·제18조에 해당하는 죄(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만 해당한다)

더. 가목부터 바목, 타목 및 하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제4조·제7조에 해당하는 죄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가 범한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2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나. 「형법」 제227조·제229조·제235조(제227조·제22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죄

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9조제1항·제1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죄

4. 선거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128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3항, 「예비군법」 제15조제3항 및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죄

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6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7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제59조에 해당하는 죄

마. 「정치자금법」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바. 「정당법」 제49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사. 「국민투표법」 제99조부터 제12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아. 「주민투표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차. 「교육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하는 죄

카. 「군형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

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

파.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

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에 해당하는 죄

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제3항[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3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너. 「산림조합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

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에 해당하는 죄

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죄

머. 「염업조합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버.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

5. 방위사업범죄 :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

6. 대형참사범죄 : 다음 각 목의 죄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이 발생
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죄

제3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
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죄”라 한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1조 각 호의 관련사건.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 수죄는 다음 각 목의 죄로 한정하되, “직접 관련성
이 있는 범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와 영장

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가.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

나.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2. 「형사소송법」 제20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

3.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4.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등)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연 락 처	(02) 2110 - 4210